

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3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3월 31일

3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(대통령령제16,672호, '99.12.31)에 따라
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
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가.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 조례 근거규정 및 용어
정비(안 제1조, 안 제10조내지 제13조)

○ 제1조중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⇒ 제46조의 2로

○ 제10조 내지 제13조중 일비를 ⇒ 수당으로

나.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(안 제2조 및 제3조)

○ 제2조중 10인이하를 ⇒10인 이내로

○ 제3조중 별표 제1호서식을 ⇒ 별표1로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
조례안을 검토한 바

개정 주요내용으로는

제1조중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제46조의 2로

제2조중 10인이하를 10인 이내로

제3조중 별표 제1호서식을 별표1로

제10조 내지 제13조중 일비를 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

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 조례 근거규정 및
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
사료됨.